

保健社會委員會

# 條例適用施設 賃貸 關聯報告

- 음료수 자판기 · 신문판매대 · 복권판매대 · 매점 -

2003. 2



서울特別市地下鐵公社

# 報 告 順 序

I. 貸 貸 基 準 ----- 1

II. 貸 貸 現 況 ----- 2

III. 運 營 實 態 及 問 題 點 ----- 3

# I. 賃 貸 基 準

## < 適 用 條 例 >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(1995.4.25제정)

- 對 象 施 設 : 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음료수자판기, 간이매점(10m<sup>2</sup>이내)
- 對 象 者 :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, 모자가정의 여성,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賃 貸 方 法 : 공모에 의해, 대상자 중 우선순위별 신청·접수 후 추첨으로 당첨자에게 임대

### [ 優 先 順 位 ]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모자가정의 여성	독립유공자 유가족
1	장애등급이 1-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등급이 3-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모자복지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자	미과세 대상자
3	장애등급이 5-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

## Ⅱ. 賃 貸 現 況

□ 총 561개소 중 임대운영 530개소, 미임대 31개소

(단위 : 개소)

구 분	대 상	임 대					미임대
		계	장애인	65세 이상 노 인	모자가정	독립 유공자	
계	561	530	296 (55.9%)	191 (36.0%)	43 (8.1%)	-	31
음료수자판기	258	246	140 (56.9%)	79 (32.1%)	27 (11.0%)	-	12
신문판매대	184	166	81 (48.8%)	73 (44.0%)	12 (7.2%)	-	18
복권판매대	103	102	60 (58.8%)	38 (37.3%)	4 (3.9%)	-	1
간이매점	16	16	15 (93.8%)	1 (6.2%)	-	-	-

※ 미임대(31개소) : 미계약 22개소, 계약해지 9개소

### [2002년도 말 임대시행]

○ 개요 : 2002.12.31로 임대기간 만료된 음료수자판기, 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의 3년간 운영자를 공모 추첨 임대

#### ○ 시행내용

- 2002.11.19 : 운영자 모집 신문광고
- 2002.12. 2 ~ 12.6 : 신청자 접수(7,133명)
- 2002.12.11 : 전산 추첨
- 2002.12.12 : 당첨자 공고
- 2002.12.16 ~ 12.30 : 당첨자와 임대차 계약

### Ⅲ. 運 營 實 態 및 問 題 點

#### □ 運 營 實 態

- 신문판매대 : 중간공급업체가 권역별로 신문을 독점 공급하고, 운영자는 단순 판매
- 음료수자판기 : 고가기기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전문유통업체에 의존설치
- 복권판매대 : 최근인터넷, 온라인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활자화 된 복권 판매실적 감소로 수익저조
- 간 이 매 점 : 역구내 동종업종과 경합으로 일부개소 수익 감소

#### □ 問 題 點

- 운영자 대부분이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운영하기 힘든 실정
  - 종업원 고용, 위탁운영 등으로 실질소득 저하
  - 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신청, 운영 개입소지 요인  
(무더기신청, 위탁운영, 명의 도용의혹 등)
  - ※ 조례 제6조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대리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
    - 공사에서도 위 취지에 따라 종업원을 들 수 있도록 허용
  - 종업원을 가장한 전대, 전매는 객관적 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적발 곤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기 투입자금 부담으로 유통업체에 의존  
(개입 빌미 제공)
- 신문, 재료 등 판매할 상품 자체 조달 곤란으로 유통업체 등 개입

- 대상자 중 “독립유공자”의 경우 연금수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지정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민원야기

**KBS 언론 보도사항 (2002.12.12)**

- 전문유통업체 등이 명의 도용 신청 및 대리운영 등 보도
-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 중(2003.1.6 ~ 현재)
  - 불법전대, 전대, 위탁운영 여부
  -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진위 여부 등

**공사에서 개선·조치한 사항** 2002년도 말 임대시행시

- 신청서 접수 : 1인 1매 개별 접수(무더기 신청 방지)
- 신청서류 :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정(관련단체 사전모집 행위 방지)
- 당첨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
(본인 직접 운영 유도)
- 임대료 납부 : 신문·복권판매대 1년 선납 → 분기별 선납(초기 자금부담 경감)
- 임대신청시 추첨보증금 예치제도 폐지(초기 자금부담 경감)
- 당첨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계약 체결
- 당첨자의 자격 진위 여부를 관할구청에 조회, 확인(미자격자 없음)

**※ [향후 임대공모 계획] —2003.4월 중(예정)**

- 2003년 5 ~ 6월 중 임대기간 만료되는 임대시설과 미임대 시설